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23138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3. 11. 7.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77,340원 한도 내에서, 87,554,577원 및 그중 85,107,547원에 대하여 2023.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9%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이후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F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대표이사 직에서도 사임하였으므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대표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F의 보증책임 승계(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강화석

별지